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 안 번 호	177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4. 20
발의자 : 이만식의원외7인

1. 주문

- 가. 결산검사위원 :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
- 나. 선임방법
 - 1)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
 - 2) 선임된 검사위원 대표자는 위원중 연장자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겸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25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조례제4조